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연구윤리

제1조(목적) 본 연구윤리는 『RKS』를 통해 연구 결과물 발표자의 연구윤리의 확립, 연구부정행위의 방지 및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문학술지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 ① 영문학술지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연구윤리위원회” 이라 한다)는 영문학술지 연구윤리위원장(이하, “연구윤리위원장” 이라 한다) 1인(원내), 영문학술지 연구윤리위원(이하 “연구윤리위원” 이라 한다) 4인(원내 2인, 원외 2인)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위촉한다. 단, 『RKS』 현직 편집위원은 구성에서 제척한다.
- ②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간사는 『RKS』 편집위원회 간사가 겸임한다.
- ④ 회의는 재적 연구윤리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연구윤리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관계자 출석, 의견 개진, 소명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조사의 착수 및 조사 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를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연구윤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연구부정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표절에 해당된다.

1. 학술지, 단행본, 학회발표 논문집에 기 출간된 본인 또는 타인의 저술, 자료 등을 인용부호, 각주, 내용 주, 또는 기타 적절한 방식을 통해 명시하지 않는 경우
2. 공개 혹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1차 자료, 기타 지적재산 등과 관련된 항목들을 출처의 명시 또는 생성자의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

② 다음 각 사항은 중복게재에 해당된다.

1. 타 학술지에 게재된 저술을 『RKS』에도 게재한 경우
2. 『RKS』에 게재한 논문의 내용 중, 본인의 과거 여타 학술지 게재논문에서 ‘연속

된 다섯 개 이상의 문장' 을 전재했으나 인용을 하지 않은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역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1. 자료나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제작하는 행위(위조)
2. 연구 관련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달리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변조)
3.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감사나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4. 이 밖에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행위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제4조(제보내용 심의 및 처리 절차) ① 『RKS』 편집위원장은 표절 또는 중복 게재에 대한 실명 또는 익명의 제보를 접수할 경우, 즉시 연구윤리위원장에게 통지하며 통지를 받은 직후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위원장의 제보 수령일로부터 15일 안에 조사위원을 확정하여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위원들은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한다(1회에 한해 15일의 심의 기간 연장 가능).

③ 연구윤리위원장 및 연구윤리위원은 당연직 조사위원이 되며, 제보된 사안에 전문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원외 인사 1-2인을 추가로 조사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개시 이전, 당연직 조사위원 중 ‘제보된 사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을 확인해 조사에서 배제한다. 이후 연구윤리위원회 간사는 확정된 조사위원을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지하며, 제보자와 피조사자가 각기 1인에 한해 기피(배제요청)한 조사위원 역시 조사에서 배제된다.
2. 조사위원의 수는 어떤 경우에도 5인을 유지하며, 당연직 조사위원 중 배제된 사람의 수에 따라 필요한 수만큼의 원외 조사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3. 당연직 조사위원은 조사 개시 전 자발적으로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 제보자와 관련해서는 신원 보호(원칙상 비공개)를 포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고(허위 제보자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피조사자에 대해서도 그 혐의가 사실로 판정되기 전에는 권리침해 최소화 및 인격권 존중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이의제기 및 변론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한다. 다만 당사자의 위원회 출석이 요망될 경우의 의무는 달리 부과한다(제보

자나 참고인은 서면 제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나 피조사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아울러 필자는 관련 자료 제출 및 제출된 자료의 사본 생성에 동의할 의무가 있다.

⑤ 조사 결과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일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통지된다. 당사자는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고, 연구윤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재심의 해 5일 내에 재통지한다.

제5조(제재) ① 연구부정행위의 수위와 맥락이 비상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게재된 논문의 취소를 『RKS』 편집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RKS』 편집위원회가 논문 취소를 결정하게 된 경우 해당 사실을 『RKS』를 통하여 공지하며 당사자들에게도 통지한다.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판정받은 필자의 『RKS』 투고(공동, 단독)를 일정기간(1-3년) 제한할 것을 『RKS』 편집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기타) ① 조사와 관련된 모든 기록은 간사의 관리 아래 10년간 보관한다.

②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는 정당한 사유,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④ 여기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원 연구윤리규정 및 기타 한국연구재단 윤리 관련 방침 등을 적용한다.